



아주대학교와 서울특별시간 실무수습 협약서

아주대학교(이하 “대학교”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이라 한다)는 우수한 법조인력 양성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대학교에 설치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실무수습의 분야) 실무수습은 서울시의 소속 부서의 업무 중 법무행정 및 일반 행정분야 등으로 하되, 추후 협의에 의하여 분야를 확대하기로 한다.

제2조(실무수습 지원의 시기, 인원) ① 서울시는 2010년 1학기부터 실무수습을 실시하며, 대학교는 실무수습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② 실무수습을 위하여 서울시가 수용하는 학생의 수는 수용예상인원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실무수습 기간, 운영방식) 실무수습기간은 2주를 원칙으로 하여 연중 운영하되, 운영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중출석형”이란 실무수습학생이 수습부서에 출근하여 지도담당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행정현장을 참관하고 그에 대한 검토 및 보고서 작성 등을 하는 실무수습을 의미한다.

2. “과제수행형”이란 실무수습학생이 수습부서에 출근·현장참관 및 재택의 방식을 병행하여 지도담당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검토 및 보고서 작성 등을 하는 실무수습을 의미한다.

제4조(실무수습 절차) ① 서울시는 실무수습 실시일 60일 전까지 대학교에 실무수습 세부운영계획을 통지한다.

② 대학교는 실무수습실시일의 30일 전까지 서울시에 수습대상학생의 명단을 송부한다.

③ 그 밖에 추가선발, 지원 및 선발의 방식 등 실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는 양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5조(평가 방법) ① 실무수습부서장은 실무수습배치부서(기관)의 학생지도담당자의 의견 및 실무수습과정에서의 참여도 등을 참작하여【별지1】서식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② 서울시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직후 다음 서면을 대학교에 송부한다.

1. 별지 1의 실습평가서
2. 별지 2의 근무상황카드

제6조(실무수습시 학생의 의무 등) ① 서울시는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에게 비밀유지 의무 기타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서울시는 학생들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상적으로 실무수습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내용을 대학교에 통보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실무수습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기타 교류) 서울시와 대학교는 업무수행이나 학술 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법제정보와 학술정보를 공유하거나 제공하는데 상호 협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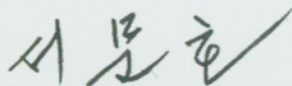
제8조(효력 발생과 갱신) 이 협약은 3년 단위로 체결하며, 종료 6개월 전에 어느 일방이 협약을 갱신하거나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서로 합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09년 12월 21일

아 주 대 학 교 총 장

서 문 호



서 울 특 별 시 장

오 세 훈

